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9 선고 2020가단156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6,979,509원 및 그 중 36,798,040원에 대하여 2019. 11. 2.부터 2020. 2. 6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정권

별지